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7. 12. 2 사하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7. 12. 5
- 다. 상정일자 : 제62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제7차 도시산업위원회('97. 12. 13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 조태순)

가. 제안이유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(법률제5301호, '97. 3. 7)
과 부산광역시 조례개정안 준칙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
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오수의 침전, 분해시설을 "오수정화시설"로
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정화조 시설을 단독정화, 합병정화조로 세분
함에 따라 정화조에 대한 용어 개정(안 제3조)
- 법 제2조 제8호의 용어가 "축산폐수정화시설"에서 "축산폐수처리시
설"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개정(안 제3조, 제4조, 제16조)
- 법 제18조의 전문개정으로 종전 "분뇨관련영업"의 용어를 "분뇨등
관련영업"으로 용어 개정(안 제3조, 제5조)
-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근거와 분뇨수집, 운반처리 규정의 개정에
따른 근거 조항 개정(안 제5조, 제15조)
- 법 제35조 제5항의 삭제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
는 규정과 정수조정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5조 제1항, 제2항)
- 기타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용어를 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'97. 3.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류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조례개정안 준칙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이 불일치한 사항을 일치 시키고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삭제로 본 조례안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정을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